

10. 建設技術開發 및 管理 등에 關한 運營規程 改正

建設交通部訓領 第125號 1995. 11. 9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에 관한 적격심사기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검사 및 건설기술용역중 설계감독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건설기술의 보호·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적격심사기준”이라 함은 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용역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인 경우 영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말한다.

제6조 제1항 중 “법 제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이라 한다)”를 “중앙위원회”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를 “국가계약법시행령”으로 한다.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적격심사 기준

제88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액은 별표 10에 의한다.

②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다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은 적격낙찰자 통보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89조(평가방법) 별표10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에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별표5 내지 별표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을 적용한다.

제90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70점 이상자가 없을 때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수 있다.

제91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②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중 결격사유를 가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공동수급업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분담비율이 20% 미만인 구성원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적격심사 관련 사항 이행) 용역발주기관은 당해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역

업자의 선정 또는 적격심사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용역업자 선정 또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과 동등이상의 이행능력 등을 입증하여 이미 제출한 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경우 용역발주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93조(기타사항) ① 제88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회계예규로 정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88조 내지 제92조의 적격심사기준이나 재정경제원의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조건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제8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용역이 아닌 용역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 서식과 별지 1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0]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88조 제1항 관련)

구 분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p>■ 당해 용역수행 능력</p>	70점	<p>■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p> <p>* $\text{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70\text{점}$</p> <p>-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p>• 적격심사 제출서류: 없음 (단, 필요시 요구가능)</p>
<p>■ 입찰가격</p>	30점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p> <p>* $\text{평점} = 30 - \left \left(\frac{88}{100} \times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p> <p>-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p>-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p>	<p>• 는 절대 값 표시임</p>
계	100점		
<p>■ 기타 당해용역수행관련 결격사유</p>	-40점	<p>■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p> <p>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낙찰자 결정일 기준) 공사시공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p> <p>2. 낙찰자 결정일 현재 파산신청증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p>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한 별표5·별표6·별표7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사용

공사설명서 기입 방법

- ㉠ 의안번호 : 의안번호를 기입한다.
 년도-차수를 기입 예)95-13
- ㉡ 공 사 명 : 공사명을 기입한다.
- ㉢ 사업구분 : ‘일괄’, ‘실시설계·시공’ ‘대안’, ‘기타’공사를 기입한다.
- ㉣ 요청구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원안설계’, ‘대안설계’를 기입한다.
- ㉤ 발주기관 :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을 기입한다.
 정부 수신처 기호표를 참조.
- ㉦ 공 종 : 공사의 종류에 따라 중분류 코드명을 기입한다.
 공종 분류표를 참조.
- ㉧ 공사구분 : ‘토목’, ‘건축’, ‘기전’을 기입한다.
- ㉨ 공사개요 : 공사의 특징을 기입한다.
 적용공법 등을 기입
- ㉩ 위 치 :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입한다.
- ㉪ 용역기간 : 공사를 설계한 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 ㉫ 공사기간 :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 ㉬ 총공사비(용역비) : 공사(용역비) 총 금액을 기입한다.(천원단위로 기입)
- ㉭ 자료보관 :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기입한다.
- ㉮ 문서번호 : 심의에 관련된 문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 ㉯ 의결구분 : 심의 결과를 기입한다.
 ‘조건부채택’, ‘원안채택’, ‘재심의’, ‘설계적격’, ‘설계부적격’ 대안채택여부를
 기입한다.
- ㉰ 요 청 일 : 심의를 요청한 날짜를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 ㉱ 심 의 일 : 심의한 날짜를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 ㉲ 첨부서류 : 제출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기입한다.
- ㉳ 설계회사 : 공사를 설계한 회사를 기입한다.
- ㉴ 심의위원 :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 ㉵ 분야별 책임 기술자
 - ㉵-1 성명 :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중 분야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한다.
 -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 ㉵-3 자격증번호 :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종목 등급을 기입한다.
 - ㉵-4 참여분야 : 참여분야를 기입한다.
 ‘총괄’,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을 기입
 - ㉵-5 참여기간 : 실제 참여 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 ㉶ 공사내용 및 기타사항 : 공사의 세부내용 등을 기입한다.

공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코드	코드명	코드	코드명
1	운송시설	11	국도
		12	고속국도
		13	공항
		14	철도
		15	지하철
		16	항만
2	수자원시설	21	하천
		22	댐
		23	지하수개발
3	공중보건시설	31	상수도
		32	하수도
		33	처리시설
4	비축 및 공급시설	41	저장시설
		42	공급시설
5	주거시설	51	공동주택
		52	단독주택
6	교육, 정보시설	61	학교시설
		62	정보시설
7	여가활동시설	71	체육시설
		72	사회여가시설
		73	공공시설
8	지역개발	81	공업단지
		82	택지개발

[별지 제18호 서식]

조치결과서

지 적 의 원	① 한글4자 이내(이하자수만표시)	지 적 분 야	② 8
지 적 사 항 및 조 치 사 항	③ 지적사항 : 280		
조치결과 :			

지 적 의 원	4	지 적 분 야	8
지 적 사 항 및 조 치 사 항	지적사항 : 280		
조치결과 :			

%참고 : 고덕체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조치결과서 기입방법

① 지적위원 : 해당 지적사항을 지적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② 지적분야 : 지적사항의 분야를 기입한다.

지적사항 분류는 건설교통부의 심의위원 분류를 사용하며 해당 심의위원이 소속된 분야를 기입한다.

③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적된 사항 및 조치한 결과를 기입한다.

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